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검 토 보 고

〈중대범죄 수사역량 및 중립성·독립성을 갖춘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인사 관련 사항 규정〉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46호)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7200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개요	1
-------------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 제안 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회부 경과	2

【중대범죄수사청법안 : 정부 제출】

1. 제안 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 검토의견	7
----------------	---

1.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총괄 검토	7
가. 배경	7
나. 정부안의 구성·주요내용	10
다. 관련 법률과의 비교	14
라. 정부안에 대한 검토	19
마. 해외 사례: 영국 등	21
바. 관계기관 의견	24

2.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	26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26
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33
1)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안 제3조)	33
2) 직무(안 제4조)	35
3)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안 제5조)	36
다. 조직	40
1) 중대범죄수사청장(안 제6조)	40
2)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안 제7조)	43
3)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안 제8조)	45
4) 차장(안 제9조)	48
5)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안 제10조)	49
6)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안 제11조)	51
7) 수사연구관(안 제12조)	52
8) 그 밖의 직원(안 제13조)	54
9) 직제(안 제14조)	55
라. 직무	58
1) 수사관의 직무 등	58
가) 수사관의 구분(안 제15조)	58
나) 수사관의 직무(안 제16조)	59
다) 권한남용 금지(안 제41조)	61
라) 직무수행 및 이의제기(안 제42조)	63

마) 정치 관여 금지 등 및 벌칙(안 제43조, 제52조)	65
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44조)	67
사) 검사와의 관계(안 제45조)	72
2) 수사심의, 수사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국제협력 등	74
가) 수사심의 등(안 제46조)	74
나) 수사 장비의 사용(안 제47조)	76
다) 유치장(안 제48조)	77
라) 손실보상(안 제49조)	78
마) 국제협력(안 제50조)	80
바) 위임규정(안 제51조)	82
마. 인사	84
1) 수사관의 임용 등	84
가) 수사관의 임용(안 제17조)	84
나) 결격사유(안 제18조)	86
다) 수사관의 신규채용(안 제19조)	91
라) 시보임용(안 제20조)	93
마) 수사관의 승진(안 제21조)	94
바) 파견 및 겸임 금지(안 제23조)	96
사) 공직임용 제한(안 제24조)	96
아) 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안 제25조)	97
자) 감찰관의 전보(안 제26조)	100
차) 감찰관의 면직(안 제27조)	101

카) 겸임(안 제37조)	102
2) 신분보장 및 징계	103
가) 적격심사(안 제28조)	103
나) 직권면직(안 제29조)	107
다) 당연퇴직(안 제30조)	109
라)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안 제31조)	110
마) 정년(안 제35조)	111
바) 징계(안 제22조)	112
사) 행정소송의 피고(안 제39조)	117
3) 인사위원회, 보수 등	118
가)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안 제32조)	118
나) 적격심사위원회(안 제33조)	121
다) 보수 등(안 제34조)	122
라) 근무성적 등의 평정(안 제36조)	123
마) 인재개발(안 제38조)	126
바)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안 제40조)	127
바. 부칙	129
1) 시행일(부칙 제1조)	129
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부칙 제2조)	130
3) 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부칙 제3조)	130
4) 공무원의 임용 특례(부칙 제4조)	131
5) 징계절차에 관한 특례 등(부칙 제5조)	136

6)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	137
7)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7조)	139
8)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부칙 제8조)	140
3. 황운하의원안과 정부안의 주요내용 비교·검토	143
가. 제정안들의 목적 및 배경	143
나. 제정안들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44
다.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 비교·검토	148
1) 중대범죄의 범위	148
2) 행정안전부(법무부)장관과의 관계	149
3)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152
4) 검사와의 관계	154

I. 개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1. 제안 경위

1. 제 안 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4. 8. 29.
3. 회부연월일 : 2024. 8.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

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회부 경과

황운하의원안은 2024년 8월 29일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12월 6일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25년 7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진행함.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37조제9항¹⁾은 중대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규정함.

황운하의원안은 2026년 3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로 회송됨.

대표발의	제출일자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송 일자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소위원회 상정	
황운하의원	2024. 8. 29.	2024. 8. 30.	2025. 7. 25.	2026. 3. 4.

1)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6. 10. 2. 시행 예정) 제37조(행정안전부) ⑨ 중대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 정부 제출】

1. 제안 경위

1. 제 출 자 : 정부 제출
2. 제출연월일 : 2026. 3. 3.
3. 회부연월일 : 2026. 3.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 보호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안 제2조 및 제4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6개 범죄로 정의하고, 공소청 소속 공무원·경찰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으로 함.

2)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안 제3조)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 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3)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안 제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4)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직무, 임명절차 및 임기(안 제6조)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및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5)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안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

중대범죄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을 두고,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중대범죄 등의 수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6)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44조)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이첩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함.

7) 검사와의 관계(안 제45조)

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되,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의 태양·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송치 전에 검사와 상호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도록 함.

8)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46조)

가) 사건관계인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등에 관한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사 등을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사심의 신청을 받은 사건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중대범죄 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II. 검토의견

1.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총괄 검토

가. 배경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²⁾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현행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검찰청이 담당하는 업무³⁾ 중 공소 제기 등의 업무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고, 중대

2)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제35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③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③·④ (생략)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⑨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⑩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범죄 수사에 대한 업무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는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등이 있음. 각 기관의 정원을 살펴보면, 검찰청 소속 검사의 정원은 2,292명이고,⁴⁾ 수사관⁵⁾은 6,160명, 수사관 외 일반직 공무원은 2,237명,⁶⁾ 경찰공무원은 17명임.⁷⁾ 그리고,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136,405명 중 경찰공무원은 131,284명, 일반직 공무원은 5,023명, 교육공무원은 22명, 소방공무원은 76명임.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소속 검사 정원은 2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 직원 정원은 20명임.⁹⁾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이라 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전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2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의 공무원 정원표 중 고위공무원단,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의 정원 수를 합하여 산출함.

6) 일반직 공무원에는 과학기술서기관, 전산사무관, 시설사무관, 시설주사보, 공업주사보, 임업주사보, 운전주사보, 통계주사보 등이 있음.

7)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직제**」 [별표 1] 검사 정원표, 직제 [별표 2] 수사관 정원표, [별표 3] 직원 정원표

정부는 예산조치와 관련해서 2026년 검찰청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청사확보 등 추가 소요 필요 시 예비비로 진행할 계획임.

나. 정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정부안은 본칙 6개 장 52개 조항 및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됨.

정부안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독립적·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인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지청을 설치하고(안 제3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를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로 정하며(안 제4조), 중대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방위사업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로 정함(안 제2조).

조직과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안 제6조), 차장(안 제9조),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안 제11조)과 수사연구관(안 제12조)을 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자격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법률 사무를 15년간 담당한 사람을 포함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안 제6조제2항),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둠.

직무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9급으로 구분하고(안 제15조),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안 제42조제1항),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안 제44조제2항),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함.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됨(안 제41조). 또한 수사관이 정치관여 행위는 금지됨(안 제43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등은 수사에 관한 적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46조).

인사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안 제17조), 결격 사유(안 제18조), 보수(안 제34조), 근무성적 등의 평정(안 제36조), 승진(안 제21조), 적격심사(안 제28조), 징계(안 제22조), 직권면직(안 제29조), 정년(안 제36조) 등을 규정함. 그리고 수사관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정부안의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목적	○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범위, 인사 등 규정(§1)
정의	○ 중대범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2) ○ 중대범죄등: 중대범죄,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
조직	○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3) ○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등(§4) ○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5) ○ 중대범죄수사청장(§6), 임명자격(§7), 후보추천위원회(§8) ○ 차장(§9),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11), 수사연구관(§12), 그 밖의 직원(§13) ○ 직제(§14) ○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지청(§10)
직무	○ 직급, 직무 - (직급)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1급~9급으로 구분(§15) -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7급 이상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①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함. 8급·9급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②에 따라 수사를 보조함(§16) - 직무수행 및 이의제기(§42)
	○ 검사·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검사와의 관계) 수사관은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함. 이 경우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45③). -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44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44③)
	○ 수사관의 준수사항 - 국민의 인권 보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 준수. 부여된 권한 남용 금지(§41)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43),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52)

구 분	내 용
	○ 수사심의 및 손실보상 등 - (수사심의)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등은 수사에 관한 적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수사심의 신청 가능(§46①) - 수사장비의 사용(§47), 유치장(§48) - 손실보상(§49), 국제협력(§50), 위임규정(§51)
인사	○ 임용 - 수사관의 임용(§17), 결격사유(§18), 신규채용(§19), 시보 임용(§20), 승진(§21) - (겸임)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 겸임 금지(§2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수사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수사관을 겸임 가능(§37) - (임용제한) 수사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 임용 불가(§24) - 감찰관의 임용·전보·퇴직(§25, §26, §27) ○ 신분보장 및 징계 - 적격심사(§28), 직권면직(§29), 당연퇴직(§30), 정년(§35) - 수사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않음(§31) - (징계) 징계위원회는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징계처분을 함. 징계의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0장 준용(§22) - (행정소송의 피고) 수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휴직, 면직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고로 함(§39) ○ 인사위원회, 보수 등 -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32), 적격심사위원회(§33) - 보수 등(§34), 근무성적 등의 평정(§36), 인재개발(§38) - 수사관에 대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40)

다. 관련 법률과의 비교

정부안이 규율하는 범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규율범위 측면에서는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¹⁰⁾과 유사하고, 「검찰청법」의 특징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경찰의 조직, 인사 및 직무에 대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유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과 유사한 조항이 있음.

현행 「검찰청법」 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정부안 조항에는 중대 범죄의 정의(안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안 제5조), 중대 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안 제8조), 수사연구관(안 제12조), 결격 사유(안 제18조), 파견 및 겸임 금지(안 제23조), 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안 제25조), 겸임(안 제37조), 위임규정(안 제51조) 등이 있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정부안 조항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안 제3조), 중대범죄 수사청장(안 제6조), 권한남용 금지(안 제41조) 등이 있음.

「경찰공무원법」 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정부안 조항에는 수사관의 신규채용(안 제19조), 수사관의 승진(안 제21조), 직권면직(안 제29조),

10) 「검찰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퇴직(안 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안 제36조), 정치 관여 금지 등(안 제43조), 정치 관여죄(안 제52조) 등이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정부안 조항에는 수사관의 직무(안 제16조), 공직임용 제한(안 제24조), 보수 등(안 제34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44조) 등이 있음. 그리고 「형사소송법」 조항과 유사한 내용의 정부안 조항에는 검사와의 관계(안 제45조)가 있음.

< 정부안 조항과 유사한 형식의 법률 규정 >

정부안 조항	정부안 내용	유사한 형식의 법률 규정
제1장 총칙		
§1	목적	「검찰청법」 제1조(목적) 조직, 직무범위, 인사와 그 밖의 사항 규정
§2	정의 중대범죄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1.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3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4	직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경찰청 제3조(직무)
§5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6	중대범죄수 사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7	중대범죄 수사청장의 임명자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⑥ 「검찰청법」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8	중대범죄수 사청장후보 추천위원회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정부안 조항	정부안 내용	유사한 형식의 법률 규정
§9	차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찰청 차장),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차장)
§10	지방중대범죄 수사청장 및 차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28조(시·도경찰청장), 제29조(시·도경찰청 차장) 「검찰청법」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11	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처수사관)
§12	수사연구관	「검찰청법」 제15조(검찰연구관)
§13	그 밖의 직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그 밖의 직원), 「검찰청법」 제45조(검찰청 직원)
§14	직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직제), 「검찰청법」 제16조(직제), 제20조(직제), 제26조(직제)
제3장 수사관		
§15	수사관의 구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계급 구분)
§16	수사관의 직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제2항, 「검찰청법」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17	수사관의 임용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검찰청법」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18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
§19	수사관의 신규채용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20	시보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경찰공무원법」 제13조(시보임용)
§21	수사관의 승진	「경찰공무원법」 제15조(승진)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22	징계	「경찰공무원법」 제32조(징계위원회) 「검사징계법」 제4조(징계위원회)
§23	파견 및 겸임 금지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24	공직임용 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25	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검찰청법」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정부안 조항	정부안 내용	유사한 형식의 법률 규정
§26	감찰관의 전보	「검찰청법」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27	감찰관의 퇴직	「검찰청법」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28	적격심사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29	직권면직	「경찰공무원법」 제28조(직권면직)
§30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 제27조(당연퇴직)
§31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4장 그 밖의 임용에 관한 사항		
§32	중대범죄 수사청 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인사위원회)
§33	적격심사 위원회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34	보수 등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35	정년	「검찰청법」 제41조(정년)
§36	근무성적 등의 평정	「검찰청법」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37	겸임	「검찰청법」 제44조(검사의 겸임)
§38	인재개발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39	행정소송의 피고	「경찰공무원법」 제34조(행정소송의 피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40	국가공무원 법과의 관계	「경찰공무원법」 제36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장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41	권한남용 금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검찰청법」 제4조제3항
§42	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43	정치 관여 금지 등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44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45	검사와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정부안 조항	정부안 내용	유사한 형식의 법률 규정
§46	수사심의 등	「(경찰청)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예규 제647호)
§47	수사장비의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48	유치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49	손실보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50	국제협력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
§51	위임규정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제6장 벌칙		
§52	정치 관여죄	「경찰공무원법」 제37조(벌칙)제3항

라. 정부안에 대한 검토

정부안은 중대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지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를 독립적·중립적·효과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취지임.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기관의 운영단계에서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자격을 단일하게 1급~9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직무 측면에서 수사관이 중립성을 갖추도록 하고, 정치 관여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짐으로써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하고, 검찰청이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을 유지하며, 다른 수사기관들과 함께 수사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관계를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유사하게 밀접한 관계¹¹⁾로 설정할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과의 관계와 같이 수사에 대해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할지를 결정하여¹²⁾ 수사권을 기소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과 함께,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인사, 직무와 관련

11)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첫 번째 사무로 검찰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8조에서도 법무부장관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규정하고 있음.

12) 「정부조직법」 제37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경찰사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도록 할 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별도의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하여 행정안전부의 관여 정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정부안은 현재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와 동일한 구조임.

다음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이첩요청권, 이첩권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중대범죄 수사에서 경합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중대범죄 수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 수사 체계를 단일화하여 수사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수사기관 간 경쟁 체계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를 견제하고, 조직간 경쟁을 추구할 것인지 등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수사 개시 후 검사 통보 등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및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마. 해외 사례 : 영국 등¹³⁾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권체계는 검사 등이 수사의 주재자¹⁴⁾로서 우리나라의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의 수사체계와 유사한 구조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설치하는 개편안은 영국의 수사·공소기관의 구조와 닮아 있음. 영국은 수사와 공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영국의 수사·공소기관에는 왕실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경찰(Police), 중대사기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와 기소 모두 담당), 국가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 국가범죄수사청은 수사를 담당)이 있음.

경찰은 경미범죄나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국가범죄수사청(NCA)은 마약, 자금세탁 등 중대범죄를 담당¹⁵⁾하며, 중대사기수사청(SFO)은 중대하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담당함. 중대사기수사청장은 매년 10건 정도만 중대사기수사청의 사건으로서 새로이 선정함으로써

13) 김광현, “영국 수사체계의 연혁과 그 시사점 - 수사·공소기관의 분리 및 보완수사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10호 1면~3면, 2025년 9월 19일

14) 독일의 검찰·경찰 관계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주재자 내지 수사지휘권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죄사건에 대해서는 예심판사가 수사권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죄사건에 대한 기소권의 행사를 위해 범행혐의의 유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다. 그리고 중죄 이외의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수사권을 가진다. 이 범위 내에서 프랑스의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출처: 허일태, “독일·프랑스의 수사구조를 통해서 본 경찰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과 수사권내용”, 「형법연구」(Ⅲ) 474면, 2007년, 진원사

15)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수사에는 아동성착취, 국경사건, 사기, 현대판 노예 및 인신매매, 불법총기, 마약밀매, 밀입국 조직범죄, 뇌물·부패, 사이버범죄, 돈세탁·불법금융, 납취·학대를 정하고 있음(출처: <https://www.nationalcrimeagency.gov.uk/what-we-do>).

연간 60건 내외의 사건만을 유지하여 처리하고 있음.¹⁶⁾

각 기관의 수사권한은 일정 부분 중복되는데, 국가범죄수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과 중대사기수사청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중대사기수사공소청이 사건의 인계를 요청하면 경찰이나 국가범죄수사청이 이에 응하여야 함.

영국 경찰은 주민직선 지방치안위원장, 지방치안패널, 내무부장관, 지방경찰청장의 사각체제로 운영됨. 왕립기소청과 중대사기수사청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며, 국가범죄수사청은 내무부장관 소관으로, 각각 장관급 소관 부처가 의회에 책임을 지고, 기본 정책의 결정 등 일정한 권한을 갖지만, 각 청은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상의 독립성을 가짐.

참고로, 미국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범죄를 중죄(felony), 경죄(misdemeanor) 등으로 구분함.¹⁷⁾ 일반적으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1년 초과와 자유형이 규정된 경우 중죄, 나머지를 경죄라고 함. 그러나 입법부가 범죄의 등급을 정하고,¹⁸⁾ 주(州)별로 그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주의 형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함. 체포의 요건에 있어서 중죄와 경죄는 차이가 있고, 대배심을 운영하는 주에서는 중죄는 대배심의 기소장(grand jury indictment)에 의해 공소제기됨.¹⁹⁾

16) 강석구, “영국 국립범죄수사청, 중대비리수사기소청 방문 및 전문가 자문”,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출장보고서 3면, 2017

17) 최철환, “영국의 경죄사건 처리절차와 형사사법체계”, 법조 55권 1호 270면, 2006

18) 미연방법전 제18집 제3559조(a)는 중죄(felony)를 A등급에서 E등급까지, 경죄(misdemeanor)를 A등급에서 C등급까지 구분하고, 범칙사건(infraction)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오기두, “미국의 형벌제도”, 저스티스 통권 제82호 128면~129면, 2004년

19) 이성기, 박용철,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I) 231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B-09, 2019년

영국 형사법에서 범죄의 단계적 분류는 약식재판 범죄(summary offences), 정식기소 범죄(indictable offences), 어느 쪽으로도 재판할 수 있는 범죄(offences triable either way)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약식재판 범죄는 약식재판 범죄를 규정한 개별법에서 약식재판 절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규정했기 때문에 약식재판 범죄가 됨. 정식기소 범죄는 정식 기소절차를 통해서만 신고될 수 있는 범죄로 모의살인, 고의살인, 공모사기, 부패한 공중도덕에 관한 죄 등 모든 보통법 범죄는 정식기소 범죄임. 둘 중 어느 하나로 기소될 수 있는 범죄에는 위험운전죄 등이 있음.²⁰⁾

20) 최철환, “영국의 경죄사건 처리절차와 형사사법체계”, 법조 55권 1호 270면~273면, 2006

바. 관계기관 의견

1) 행정안전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보호와 인권보호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경찰청

정부안 제2조(정의)제1호바목의 사이버범죄 중 해킹 등 주요 침해 범죄와 관련해서는 IP, 악성코드 해시값 등 침해지표의 체계적인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일 기관에서 전담하여 관리·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동안 경찰의 사이버팀이 주요 해킹 등 침해사건을 전담하고, 국제공조 인프라가 경찰 사이버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정부안 제44조제3항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과 관련해서는 수사 지연의 우려가 있고,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경합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2항²¹⁾ 단서와 유사한 방식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사이에도 도입

21)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하여, 먼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범죄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므로, 정부안 제44조제2항의 인지통보 의무 대상 및 정부안 제44조제3항 본문의 이첩요청권 행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4) 법원행정처

정치관여죄를 신설하는 정부안 제43조제2항제3호, 제52조와 관련해서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정부안 제4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제3호는 다른 수사기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규정인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법관의 자의방지 및 국민의 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 부패범죄 나. 경제범죄 다. 방위사업범죄 라. 마약범죄 마.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바. 사이버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다.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정부안 제1조는 정부안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과 유사하게 조직, 직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현행 「검찰청법」 제1조(목적)²²⁾가 있음.

정부안 제1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인사가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설계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정부안 제2조제1호는 중대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있음. 정부안 제2조제2호는 중대범죄등에 포함되는 범죄로는 공소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한 범죄, 위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함.

정부안 제2조에 따른 중대범죄등의 내용은 현행 「검찰청법」 제4조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와 유사한 내용임.

22) 「검찰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부안의 중대범죄와 「검찰청법」 제4조의 중요범죄 비교 >

정부안 제2조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중대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 제4조①제1호가목) 중요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제2호나목) 중대범죄등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 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 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규정 제2조제3호가목)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²³⁾
(제2호가목) 중대범죄등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 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 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법 제4조①제1호나목) 중요범죄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제2호다목) 중대범죄등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①제1호다목) 중요범죄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 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3)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입법례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고발)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고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안 제2조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검찰청법」 제4조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와 유사하게 함으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역량을 유지하면서 수사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구)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제4조제1호가목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함.²⁴⁾

다만, 정부안 제2조의 중대범죄 중 사이버범죄는 현행 법령²⁵⁾에서 세부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및 불법콘텐츠 범죄로 분류한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연간 34만건 발생²⁶⁾하는 등 다수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24) 참고로, 「검찰청법」 제4조제1항가목은 2022년 5월 9일 개정되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개정되었는데, 이후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부패범죄의 범주에 공직자범죄(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선거범죄(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를 추가하고, 경제범죄의 범주에 방위사업범죄(기술 및 자원 보호 관련 경제범죄의 하나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죄를 추가함.

25) 사이버범죄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시행령으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제5항, 「검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수사국)제3항이 있음.

26)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건)	234,098	217,807	230,355	241,842	314,519
검거건수(건)	157,909	138,710	143,885	138,171	170,140

출처: 지료누리 e-나라지표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발생 및 검거”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8

「검찰청법」 제4조제1호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범죄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그리고,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국, 형사국, 안보수사국의 사무²⁷⁾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는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부패·경제·마약 등 주요 범죄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의 광역수사단 등이 분장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개념상 정부안에 따른 중대범죄와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2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부패·공공·경제·마약·국제·강력·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56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부패·공공·경제·마약·국제·강력·조직 범죄 등 주요 범죄 사건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장 시·도경찰관서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수사대·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를 둔다.

② 각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반부패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④ (생략)

⑤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주요 경제·금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⑥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⑦·⑧ (생략)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수사영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보
이므로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⁸⁾

참고로, 현행 법률 중 중대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인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서는
중대범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²⁹⁾ 범죄의 중대성은 양형 과정에서
범죄 유형과 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됨.³⁰⁾

28) 현재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분리하는 과정이고,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수사 사
무에는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교통 관련 범죄 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경
찰사무가 정부안의 중대범죄와 중첩되는 부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
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
·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 다. (생략)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2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나. 벌표에 규정된 죄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30)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제3항은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제1호), 두 번째 고려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영미법의 경우에는 중죄와 경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해외 입법례로 영국의 「범죄와 법원법 2013」 제1조제4항은 국가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이 조직범죄 및 중대범죄에 맞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³¹⁾

경찰청은 정부안 제2조(정의)제1호바목의 사이버범죄 중 해킹 등 주요 침해범죄와 관련해서는 IP, 악성코드 해시값 등 침해지표의 체계적인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일 기관에서 전담하여 관리·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동안 경찰의 사이버팀이 주요 해킹 등 침해 사건을 전담하고, 국제공조 인프라가 경찰 사이버 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수 있는 사정(제2호)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을 기준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②(생략)

③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2.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3. ~ 8. (생략)

31) 「Crime and Courts Act 2013」

1 The NCA and its officers

(1) ~ (3) (생략)

(4) The NCA is to have the function (the “crime-reduction function”) of securing that efficient and effective activities to combat organised crime and serious crime are carried out (whether by the NCA, o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or other persons).

나.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1)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둔다. ③ 인구, 교통, 지리적 면적 등 그 밖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지방수사청이 설치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수사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지청의 설치·명칭·위치·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3조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및 그 지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정부안 제3조제2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함. 정부안 제3조제3항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함.

정부안 제3조제3항을 통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지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2026년 3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었고, 2026년 7월 1일 시행예정이라는 점에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청이 설치될 수 있는 곳에 통합 특별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임.

참고로, 현재 특별시 1개(서울), 광역시 6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특별자치시 1개(세종), 도 7개(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3개(강원, 전북, 제주)가 있음.

정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문언과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있음. 동 조항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³²⁾

정부안 제3조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3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위치, 명칭, 관할 구역과 지청의 설치, 위치, 명칭,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3조제4항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은 중대범죄 수사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인데, 이는 정부안 제14조(직제)³³⁾를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안 제3조제4항 내용과 정부안 제14조를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직무(안 제4조)

제 정 안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정부안 제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하는 직무를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제1호)와 법령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2호)으로 정하고 있음.

2026년 10월 2일 시행예정인 「정부조직법」 제37조제9항³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음. 동 사무가 정부안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으로 보임.

33) 정부안 제14조(직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6. 10. 2. 시행 예정)

제37조(행정안전부) ⑨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정부안 제4조제2호와 유사한 형식의 입법례로는 현행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6호가 있음.³⁵⁾ 동 조항에서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의 직무에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정부안 제4조제2호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정부조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 수사 외의 권한을 부여 받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안 제4조제2호와 같이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정부안 제4조와 유사 입법례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³⁶⁾가 있음. 동 직제 제3조는 경찰청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³⁷⁾에서 규정한 경찰청의 사무인 치안에 관한 사무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3)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35)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 5. (생략)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7)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정부안 제5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정부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안전부령인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있음.

동 규칙은 2022년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시행되었고, 동 규칙에서는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경찰 분야의 기본계획과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중요정책·계획의 추진 실적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³⁸⁾ 개별 사건의 지휘·감독에 관한

38)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22. 8. 2. 제정·시행)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경찰·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안 제5조와 관련해서는 ①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가 근본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권한을 갖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³⁹⁾은 경찰청장도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안 제5조가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정부안 제5조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례로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⁴⁰⁾이 있고, 「공소청법안」 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⁴¹⁾도 유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주된 권한도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것임.⁴²⁾

해외 사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수사기관 중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의

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책협의회의)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3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40)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41) 「공소청법안」 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42)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35조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사사무·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음.

경우 영국 내무부와 국가범죄수사청이 작성한 프레임워크 서류 (Revised Framework document for the National Crime Agency 2015년 5월)의 역할과 책임 부분에서 내무부장관(The Home Secretary)이 내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영국의 국경과 국가 안보를 수호할 책임을 맡고 있다고 규정하고, 내무부 장관은 국가범죄수사청 (NCA) 청장 및 NCA의 전략적 파트너와 협의하여 NCA의 ‘전략적 우선 순위’를 결정할 법적 의무를 가지며, 내무부 장관은 NCA 청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동시에 청장의 운영 독립성(4.2b항 참조)을 존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내무부 장관은 청장을 선임 및 임명하고 청장에게 필요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⁴³⁾

43) 영국 내무부(Home Office), 국가범죄수사청(NCA), “Revised Framework document for the National Crime Agency” 4면, 2015년 5월

4. Roles and Responsibilities

Home Secretary

The Home Secretary is charged with safeguarding the public, preventing crime and protecting the UK’s borders and national security. The Home Secretary will have a legal duty to determine the ‘strategic priorities’ for the NCA, in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 General and with the NCA’s strategic partners.⁴ The Home Secretary will hold the Director General to account for the discharge of the ‘NCA functions’ while also respecting the Director General’s operational independence (as explained at paragraph 4.2b) and, where appropriate, the Home Secretary will account to Parliament. The Home Secretary will also select and appoint the Director General⁵ and will designate the Director General with operational powers as required.⁶

출처: <https://www.nationalcrimeagency.gov.uk/who-we-are/governance-and-transparency> 홈페이지의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부분 중 NCA Framework document(223KB) PDF 파일

다. 조직

1) 중대범죄수사청장(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정부안 제6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함.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8조제2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유사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⁴⁴⁾은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음.

정부안 제8조제3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동 임명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국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임.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⁴⁵⁾이 있음. 동 조항에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4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4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정부안 제8조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⁴⁶⁾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청장의 임기와 동일하고, 「검찰청법」 제12조제3항⁴⁷⁾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와 동일함.

정부안 제8조제5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대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⁴⁸⁾은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검찰총장도 탄핵 소추될 수 있음.⁴⁹⁾

4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47)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찰청장)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9)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정부안 제7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으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국가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을 정하고 있음.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수사 등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중대 범죄수사청을 독립적,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사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정부안 제7조제1항제1호는 임명자격을 갖춘 자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정하고 있지만, 수사는 드러나지 않는 범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범인의 발견·확보, 증거 수집 등의 활동으로, 그 과정에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⁵⁰⁾을 미칠 수 있는 행정작용이므로, 판결, 기소, 변호 및 법률에 관한 사무와 차이가 있으며, 아래의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자격에 대한 유사입법례를 고려하면, 임명자격의 첫 번째 호인 안 제7조 제1항제1호를 ‘국가기관 등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유사입법례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청장의 임명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음.

동 법률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 자격에는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임.⁵¹⁾

50)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 ⑦ (생략)

5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

3)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제 정 안

1.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⑧ 후보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8조는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동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함.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8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3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량이

뛰어난 후보자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유사입법례로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있음.⁵²⁾

- 52)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무부 검찰국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 ⑤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⑨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⑩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4) 차장(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차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정부안 제9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함.

정부안 제9조를 통해 차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차장을 두고 있는 유사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찰청 차장)⁵³⁾,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⁵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차장)⁵⁵⁾이 있음.

5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경찰청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4)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5)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그 지방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지방수사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④ 지방수사청 차장은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정부안 제10조제1항·제2항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두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정부안 제10조제2항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10조제3항·제4항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차장은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과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에 제28조(시·도경찰청장), 제29조(시·도경찰청 차장)와 현행 「검찰청법」은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를 두고 있음.⁵⁶⁾

정부안 제10조에 따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유사입법례의 시·도경찰청, 지방검찰청 등과 유사한 성격의 조직으로 중대범죄 수사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정부안 제3조제3항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지청을

5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시·도경찰청 차장) ①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찰청법」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청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청장의 역할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지청장에 대한 입법례로 현행 「검찰청법」 제22조제2항은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음.⁵⁷⁾

6)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정부안 제1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중대범죄등의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두고,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음.

특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검사,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됨.⁵⁸⁾

57) 「검찰청법」 제22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58)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정부안 제1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소속과 역할을 명시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이 직무를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정부안 제11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처수사관)가 있음.⁵⁹⁾

7) 수사연구관(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수사연구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정부안 제12조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12조는 수사연구관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등 복잡한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대한 기획·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등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는 「검찰청법」 제15조는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⁶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경찰청 제19조(수사국)는 경찰청 수사국장이 부패범죄, 공공범죄, 경제범죄 및 금융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정책·수사지침 수립·연구·분석 및 수사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담당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함.⁶¹⁾

60) 「검찰청법」 제15조(검찰연구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6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1명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패범죄, 공공범죄, 경제범죄 및 금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감독

2. 제1호의 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정책·수사지침 수립·연구·분석 및 수사기법 개발

3. 제1호의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4.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5.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정보의 수집·분석

7.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8.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9.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10. 사이버수사에 관한 기법 연구

11. 사이버수사 관련 국제공조에 관한 사항

12. 사이버테러(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을 말한다) 대응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직원(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그 밖의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으로 수사관 외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정부안 제13조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으로 수사관 외에 일반직 공무원을 두는 근거를 규정함.

중대범죄수사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위한 수사관 외에도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 및 국민의 민원 접수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다수의 공무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⁶²⁾은 6,160명, 수사관 외 일반직 공무원은 2,237명,⁶³⁾ 경찰공무원은 17명임.⁶⁴⁾ 그리고,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136,405명 중 경찰공무원은 131,284명, 일반직 공무원은 5,023명, 교육공무원은 22명, 소방공무원은 76명임.⁶⁵⁾ 고위공직자범죄

13.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수사국) 제3항제1호의 업무는 경찰청 수사국의 경제범죄수사과 경제범죄수사정책계,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반부패수사계와 공공범죄수사계 등이 담당하고 있음.

6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의 공무원 정원표 중 고위공무원단,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의 정원 수를 합하여 산출함.

63) 일반직 공무원에는 과학기술서기관, 전산사무관, 시설사무관, 시설주사보, 공업주사보, 임업주사보, 운전주사보, 통계주사보 등이 있음.

6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6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수사처 소속 검사 정원은 2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20명임.⁶⁶⁾

유사한 형태의 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그 밖의 직원), 「검찰청법」 제45조(검찰청 직원)이 있음.⁶⁷⁾

9) 직제(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직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14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14조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유사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별표 1] 검사 정원표, 직제 [별표 2] 수사관 정원표, [별표 3] 직원 정원표

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그 밖의 직원) ①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검찰청법」 제45조(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제31조(직제)⁶⁸⁾와 「검찰청법」 제16조(직제), 제20조(직제), 제26조(직제)가 있음.⁶⁹⁾

다만, 정부안 제3조제4항⁷⁰⁾을 통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은

6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31조(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69) 「검찰청법」

제2장 대검찰청

제16조(직제)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제3장 고등검찰청

제20조(직제)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의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6조(직제)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과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정보통신서기관·검찰사무관·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제4항의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70) 정부안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④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지청의 설치·명칭·위치·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안 제3조제4항과 제14조는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안 제3조제4항 내용과 정부안 제14조를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가 마련되어 있음.⁷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의 내용에는 하부조직, 대변인, 인권감찰관, 기획조정관,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 수사부, 공수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개방형직위 및 임시조직 운영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71) 참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월 14일 제정되어 2020년 7월 15일 시행되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는 2021년 1월 21일 제정·시행되었음.

라. 직무

1) 수사관의 직무 등

가) 수사관의 구분(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수사관의 구분)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다.

정부안 제15조는 수사관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정부안 제15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을 단일한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인사 운영 과정에서도 연계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특정직 공무원⁷²⁾인 수사관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외부 임용 가능성⁷³⁾을 열어둔 것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72) 제정안 제11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73) 제정안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참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2026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서는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동 설계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었고,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정부안 제15조와 같이 수정됨.

유사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계급 구분)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11단계로 구분하고 있음.⁷⁴⁾

나) 수사관의 직무(안 제16조)

제 정 안
제16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의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정부안 제16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의 직무를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로 정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의 직무를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직무로 정하고 있음.

74) 「경찰공무원법」 제3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음.⁷⁵⁾

정부안 제16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형사절차의 하나에 해당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 (구)「형사소송법」(1954년 제정 이후 2020년 2월 4일 개정 전까지 법률) 제196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에 수사관을 명시하고 있었음.⁷⁶⁾

이를 고려하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의 수사관을 추가하고, 「형사소송법」 제197조제2항에 중대범죄수사청 8급 이하의 수사관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만, 정부안 제16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의 수사관을

75)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76) (구) 「형사소송법」(법률 제16850, 2019. 12. 31. 제정·시행)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 제15조는 수사관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7급 이상의 수사관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포함되어 중대범죄수사청장 부분은 중복되므로, 정부안 제15조에서 수사관의 구분 중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삭제하거나 정부안 제16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안 제16조와 유사한 방식의 규정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제2항⁷⁷⁾이 있음.

다) 권한남용 금지(안 제41조)

제 정 안
제41조(권한남용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안 제41조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7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사처수사관의 직무) ① (생략)
 ② 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정부안은 중대범죄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을 다시 한번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41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가 있음. 그리고 현행 「검찰청법」 제4조제3항에서도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⁷⁸⁾

정부안 제41조(권한남용의 금지)는 정부안 제5장(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직무수행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유사입법례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찰의 임무(제3조)와 경찰의 사무(제4조) 이후에 권한남용의 금지(제5조)가 규정되어 있고,⁷⁹⁾ 유사입법례인 「검찰청법」⁸⁰⁾에서는 검사의 직무(제4조제3항)에 인권보호 및 중립에

7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경찰의 임무), 제4조(경찰의 사무),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80) 「검찰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검찰청),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제4조(검사의 직무)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안의 경우(권한남용의 금지) 내용을 정부안 제4조(직무) 뒤의 제5조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직무수행 및 이의제기(안 제42조)

제 정 안
제42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① 수사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사관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은 이의제기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정부안 제42조제1항은 수사관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42조제1항은 수사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전체가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조직의 역량을 적절히 배분하여 중대범죄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42조제1항과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⁸¹⁾, 「검찰청법」 제7조제1항⁸²⁾이 있음.

8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82)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정부안 제42조제2항은 수사관이 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에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소속 지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은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 내부적으로 지휘·감독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정부안 제42조제2항은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을 중대범죄 수사청장 또는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⁸³⁾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 입법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⁸⁴⁾, 「검찰청법」 제7조제2항⁸⁵⁾이 있고, 동 조항들에서는 이의제기의 상대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83) 예를 들어, 7급 수사관이 5급 수사관의 지휘·감독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지휘 감독에 대한 이견을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임.

8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수행)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5)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마) 정치 관여 금지 등(안 제43조)

제 정 안

제43조(정치 관여 금지 등) ① 수사관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52조(정치 관여죄) 수사관이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정부안 제43조는 수사관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43조제2항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음.

정부안 제43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취지임.

정부안 제43조제2항 각 호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 제43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 제1호, 제2호, 제4호~제7호는 유사 입법례인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동일한 내용임.⁸⁶⁾

정부안 제43조제2항제3호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대하여 유리 또는 불리

86)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하게 처분하거나 처분을 약속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안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부안 제52조는 제43조의 정치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52조는 정치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 시 이를 제재함으로써 정치관여 금지 등의 의무가 실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52조는 처벌의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 입법례인 「경찰공무원법」 제37조 제3항과 동일한 수준임.⁸⁷⁾

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안 제44조)

제 정 안
제4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 무원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87) 「경찰공무원법」 제37조(벌칙)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2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 살상의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24조 또는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정 안

- 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나목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정부안 제44조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임.

그리고 정부안 제44조제3항·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안 제44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범죄가 지능화, 기업화, 국제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체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임.

정부안 제44조제2항은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에 대한 단서를 인지하는 경우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⁸⁸⁾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44조제3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복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44조제4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건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간의 사건 배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88)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6. 10. 2. 시행예정) 제37조(행정안전부) ⑨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검사가 경찰청에 송치 요구⁸⁹⁾를 한 건은 연 평균 183건이고, 검찰청이 접수한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송한 건수는 연평균 20,364건임.

< 검사의 송치요구 및 검찰청이 경찰청으로 이송한 현황(2021년~2025년)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검사의 송치요구(건)	90	211	203	186	222
검찰청이 접수한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송한 건수(건)	23,967	19,664	18,984	20,882	18,323

자료: 경찰청 KICS

정부안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3항이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은

89)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등에 따라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송치요구 사유별 통계는 구분되지 않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44조제4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는 주체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실제 처리하는 사건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 수사청장에게 사건의 이첩권한을 부여하되 해당 권한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하는 형식의 입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해외 사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수사기관 중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범죄수사청(National Crime Agency)의 경우 국가범죄수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과 중대사기수사공소청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⁹⁰⁾

참고로, 경찰청은 정부안 제44조와 관련하여 수사지연의 우려가 있고,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경합에 대해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와 유사하게,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사이에도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90) 김광현, “영국 수사체계의 연혁과 그 시사점 - 수사·공소기관의 분리 및 보완수사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10호 3면, 2025년 9월 19일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범죄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므로, 정부안 제44조제2항의 인지통보 의무 대상 및 정부안 제44조제3항 본문의 이첩요청권 행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사) 검사와의 관계(안 제45조)

제 정 안
제45조(검사와의 관계) ① 수사관은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의 수사에 관한 사항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하고, 지청의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한 지방수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가 담당한다. ③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 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사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 사항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소멸하거나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범죄의 태양(態樣), 규모 또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

제 정 안
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검사와 수사관 간에 준수하여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45조제1항은 수사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

정부안 제45조제1항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공소청과 중대 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 이후에도 범의자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과정이 유기적으로 협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45조제3항은 수사관이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공소청 검사에게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45조제5항은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45조제3항과 제5항을 통해 해당 검사가 수사 사건을 빠른

시점에 인지하도록 하고, 수사관과 검사가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공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재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통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에 대해 보다 빠른 시점에 사건을 통지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형법」 제126조에 따른 피의사실공표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⁹¹⁾

2) 수사심의, 수사장비의 사용, 손실보상, 국제협력 등

가) 수사심의 등(안 제46조)

제 정 안
제46조(수사심의 등)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대리인을 말한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입건 전 조사, 수사에 관한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하게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조사·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각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심의

91)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정 안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심의
 3. 주요 수사정책 등에 대한 자문 및 권고
 4.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부치는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수사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 ④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각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⑤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 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절차 및 그 밖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46조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대리인 등 사건관계인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입건 전 조사, 수사에 관한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심의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청은 경찰청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수사심의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은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을 말한다)에 심의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된 경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⁹²⁾

정부안 제46조는 수사심의회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사의 적정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나) 수사 장비의 사용(안 제47조)

제 정 안
제47조(수사 장비의 사용) 수사관은 범인 검거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액체분사기·전자충격기·전자진압봉·삼단봉·방탄복 등 수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92) 경찰청 법령해석 정보[경찰청(경기남부 화성서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2025. 7. 17.]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84636&ofiClsCd=350128>

정부안 제47조는 수사관이 범인 검거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액체분사기·전자충격기·전자진압봉·삼단봉·방탄복 등 수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47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등의 수사 활동 중에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수갑, 전자충격기 등의 수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47조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가 있음.⁹³⁾

다) 유치장(안 제48조)

제 정 안
제48조(유치장) ① 중대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

9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 30.>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 또는 지청에 유치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장이 설치되지 않거나 유치장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 또는 지청에 인접한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해당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교정시설의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부안 제48조는 중대범죄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체포·구속된 사람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수사청 및 지청에 유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48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한 피의자 등을 유치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정부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이 있음.⁹⁴⁾

라) 손실보상(안 제49조)

제 정 안
제49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

9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제 정 안

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수사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수 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49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49조는 손실보상을 법률로써 하도록 한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⁹⁵⁾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적법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49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손실보상)⁹⁶⁾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국제협력(안 제50조)

제 정 안
제50조(국제협력)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등에 대한

- 95)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9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수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정부안 제50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025년에 캄보디아 범죄단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최근 범죄가 국제화되고 있으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제범죄 및 부패범죄 등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및 국제 협력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부안 제50조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으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⁹⁷⁾이 있음.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제2호⁹⁸⁾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근거를 신설하여 2026년 7월

97)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98)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7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⁹⁹⁾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바) 위임 규정(안 제51조)

제 정 안
제51조(위임규정)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5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위임 규정은 2014년 5월 20일 개정 전(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3조(시행령)¹⁰⁰⁾에서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 현재는 일반적 위임 근거조항은 없음.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5. (생략)

9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 제11736호, 2014. 5. 20. 개정 전 법률) 제1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고, (구)「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유사 입법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 제51조의 규정은 행정안전부령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인사

1) 수사관의 임용 등

가) 수사관의 임용(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수사관의 임용) ①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수사관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재위임할 수 있다.

정부안 제17조제1항은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17조제1항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5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청수사관의 임명에 국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17조제1항과 유사한 입법례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1항 본문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17조제2항은 6급 이하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하도록 함.

정부안 제17조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청 인사를 담당하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임.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의 휴직을 명하며, 검찰청 직원의 보직을 법무부장관이 행하도록 하고 있음.¹⁰¹⁾

다만, 조직의 인사권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무부·검찰청¹⁰²⁾과 같이 주요사무를 공유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2항은 청장¹⁰³⁾이 청

101) 「검찰청법」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2.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에 그 청원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법률연수를 하게 되었을 때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이 필요할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① 검찰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생략)

102)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03) 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소속 장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인 경찰청의 경우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서 경찰청장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도록 규정¹⁰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이 6급 이하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임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나) 결격사유(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관에 해당함.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③ ~ ⑦ (생략)

「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속 장관”은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인 부·처·청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포함한다), 대통령경호처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104)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 정 안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부안 제18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소청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음.

정부안 제18조제1호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총 11개호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호를 나열해서 정부안 제18조제2호~제4호와 함께 기재하면 아래와 같음.

< 정부안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 >

번호	구 분	결격사유 내용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정부안 제18조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번호	구 분	결격사유 내용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¹⁰⁵⁾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7호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정부안 제18조제3호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8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정부안 제18조제4호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정부안 제18조는 내용 측면에서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¹⁰⁶⁾

정부안 제18조의 결격사유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에 규정한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와 비교해 보면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에서 정부안 제18조보다 강화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에서 정부안 제18조보다 강한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제1호)¹⁰⁷⁾, 복수국적자(제2호), 피한정후견인(제3호),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제9호)임.¹⁰⁸⁾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106)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7) 동 결격사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도 규정되어 있음.

108)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안 제18조의 결격사유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 제9조¹⁰⁹⁾는 벌금형의 분리 선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안에서는 벌금형의 분리선고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정부안의 경우에는 제40조에서 수사관에 대해 정부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¹¹⁰⁾의 벌금형의 분리선고 조항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109) 「경찰공무원법」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 11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다) 수사관의 신규채용(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수사관의 신규채용) ① 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 및 제21조에 따른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19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하도록 하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정부안을 제19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신규채용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19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1항은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을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

3항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¹¹¹⁾

정부안 제19조제2항은 수사관의 채용시험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19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거나 또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경정 이하의

-
- 111)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 ④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인 경찰청장이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있음.¹¹²⁾

라) 시보임용(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시보 임용) 5급 이하 수사관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5급 수사관: 1년
2. 6급 이하 수사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거나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20조는 5급 이하 수사관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112)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제10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20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시보 임용을 통해 중대범죄 수사청수사관의 신규 채용 절차를 신중하게 운영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을 신규 채용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20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경찰공무원법」 제13조는 시보 임용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¹¹³⁾

마) 수사관의 승진(안 제21조)

제 정 안
제21조(수사관의 승진) ① 수사관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 임용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수사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임용 방법, 승진에 필요

113) 「경찰공무원법」

제13조(시보임용) ① 정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 정 안
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2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도록 하되,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수사관은 특별승진임용을 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2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승진임용의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21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경찰공무원법」 제15조가 있음.¹¹⁴⁾

114) 「경찰공무원법」 제15조(승진)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파견 및 겸임 금지(안 제23조)

제 정 안
제23조(파견 및 겸임 금지)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정부안 제23조는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23조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인적 구성 측면에서도 분리하려는 취지임.

정부안과 유사한 규정으로 「검찰청법」 제44조의2제1항은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사) 공직임용 제한(안 제24조)

제 정 안
제24조(공직임용 제한)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정부안 제24조는 수사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24조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인적 구성 측면에서도 일정 기간 분리하려는 취지임.

유사한 입법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제2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¹¹⁵⁾

그리고 「검찰청법」 제44조의2제2항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아) 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안 제25조)

제 정 안
제25조(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이하 “감찰관”이라 한다)을 두며, 중대범죄수사청 내부 또는 외부로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관은 수사관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관은 10년 이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재직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재직·종사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1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6조(공직임용 제한 등)** ①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은 제외한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 ③ 수사처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④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다.

제 정 안

- ④ 제3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다.
- ⑤ 제4항의 추천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수사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하고, 임용 당시 수사관이 아닌 사람은 신규임용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한다.
- ⑥ 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⑦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정부안 제25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을 임용하는 특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감찰관은 중대범죄수사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감찰관은 수사관으로 보(補)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을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25조제3항은 감찰관의 임명 자격을 10년 이상 동안 정부안

제7조제1항 각 호의 직위에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률 또는 수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감찰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취지임.

정부안 제25조제4항과 제5항은 감찰관의 임용 절차를 정하고 있음.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가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추천받은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함.

정부안 제25조제4항과 제5항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감찰관을 임용함으로써 동 임명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국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25조제6항은 감찰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은 임기가 끝난 감찰관은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정부안 제25조제7항에 따르면, 후임자가 임용되지 않는 경우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정부안 제25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검찰청법」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에서는 정부안 제25조제6항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28조의4제1항은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연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음.¹¹⁶⁾

자) 감찰관의 전보(안 제26조)

제 정 안
제26조(감찰관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정부안 제26조제1항은 감찰관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116) 「검찰청법」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이하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라 한다)는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로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10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①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정부안 제26조제1항은 감찰관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감찰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찰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26조제2항은 감찰관에게 징계사유가 있거나 감찰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26조제2항은 감찰관으로 임용되었으나 감찰관으로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만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참고로, 정부안 제26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검찰청법」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가 있음.¹¹⁷⁾

차) 감찰관의 면직(안 제27조)

제 정 안
제27조(감찰관의 면직)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117) 「검찰청법」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 정 안

감찰관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감찰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그 감찰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② 감찰관 적격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관 적격심사”는 “감찰관 적격심사”로 본다.

정부안 제27조는 감찰관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감찰관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감찰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27조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떨어지는 감찰관을 면직 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진 감찰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찰업무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27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검찰청법」 제28조의4제2항¹¹⁸⁾이 있음.

카) 겸임(안 제37조)

118) 「검찰청법」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①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연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적격심사에 관하여 제3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임명 후 7년마다”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 정 안
제37조(겸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수사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는다.

정부안 제37조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수사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37조는 「검찰청법」 제44조와 동일한 구조의 내용임.¹¹⁹⁾ 「검찰청법」 제44조에 따라 검사는 법무부 검찰국 등에 겸임하여 근무를 하고, 이 경우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는 사례가 있음.

「검찰청법」 제44조가 운영되는 모습을 고려하면, 정부안 제37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행정안전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겸임하여 근무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신분보장 및 징계

가) 적격심사(안 제28조)

제 정 안
제28조(적격심사) ①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6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119) 「검찰청법」 제44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 보수가 더 많은 직위의 보수를 받으며, 그 겸직 검사의 수는 제36조의 검사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정 안

총 3년 이상 받았을 때에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사관 적격심사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이 수사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수사관의 면직을 건의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수사관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수사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 적격심사 대상자의 의견진술, 적격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28조는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제36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받았을 때에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부적격자로 결정하면 적격심사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수사관의 면직을 건의함.

행정안전부장관은 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수사관에 대한 면직을 제청함.

정부안 제28조는 3급 이상의 직급이 높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자격을 심사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적법하고 적절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정부안 제28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가 있음.¹²⁰⁾

120) 「검찰청법」

-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 방식,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 제70조의2(적격심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삭제 <2014. 1. 7.>
 2.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때
-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에 받은 최하위 등급을 포함한다.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참고로,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적격심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정 이상의 계급에 대해서는 계급정년이 적용되고 있음.¹²¹⁾

정부안 제40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부안 제4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적격심사)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번 받은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이른 때 및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1년 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받지 못한 때 받도록 하여, 정부안 제28조가 적격심사의 대상을 「국가공무원법」보다 더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적격심사를 일반공무원보다 완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됨.

5.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이수 및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확인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⑥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121)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나) 직권면직(안 제29조)

제 정 안
제29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수사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직권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정부안 제29조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의 사유를 살펴보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제3호),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제4호),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제5호),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제7호),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제8호)를 정하고 있음.

정부안은 직권면직의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유 외에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유사입법례로 「경찰공무원법」 제28조에서는 직권면직을 규정하고 있음.¹²²⁾

122) 「경찰공무원법」 제28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3.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4.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이나 휴직 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다) 당연퇴직(안 제30조)

제 정 안
제30조(당연퇴직)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부안 제30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임.

정부안 제30조는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사유 외에는 당연퇴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30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경찰공무원법」 제27조가 있음.¹²³⁾

123) 「경찰공무원법」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7조는 당연퇴직 사유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경우(「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5호)가 포함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보다 높은 수준이 있다는 점에서, 당연퇴직 사유도 「경찰공무원법」 제27조가 정부안 제30조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수사 업무에 종사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안 제30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를 「경찰공무원법」 제30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안 제31조)

제 정 안
제31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수사관은 탄핵(중대범죄수사청장에 한정한다),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정부안 제31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탄핵(중대범죄수사청장의 경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정부안 제31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휴직, 강임 또는 면직 조치의 사유를 형의 선고, 징계처분 및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정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31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공무원법」 제68조가 있음.¹²⁴⁾

마) 정년(안 제35조)

제 정 안
제35조(정년)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아닌 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부안 제35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년을 65세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음.

유사입법례와 비교해보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정년인 65세는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정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정년 60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관과 경찰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한 수준임.

참고로, 「경찰공무원법」 제30조는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124)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41조는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정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정년은 65세,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서는 차장 및 수사처검사의
 정년은 63세, 제10조제3항에서는 수사처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정함.

바) 징계(안 제22조)

제 정 안
제22조(징계) ① 수사관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1. 중대범죄수사청장, 5급 이상 수사관: 「국가공무원법」 제81조제1항 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6급 이하 수사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 치된 징계위원회 ② 수사관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 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수사관의 임용권자(제17조제3항에 따 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 구 절차 및 의결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수사관의 징 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징계에 관하 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을 준용한다.

정부안 제22조는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정부안 제22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5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6급 이하의 수사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실시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22조제1항은 징계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가 신중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결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22조와 유사한 입법례로 「경찰공무원법」 제32조¹²⁵⁾에서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¹²⁶⁾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인 경찰청(중앙징계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시·도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 경찰서(보통징계위원회) 등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125) 「경찰공무원법」

제32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6)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원회”라 한다)와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합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한편, 「검사징계법」 제4조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두고, 제5조는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있음.¹²⁷⁾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에 대한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의 입법례와 중대범죄수사청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 필요성을 감안하여, 6급 이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안 제22조제2항은 수사관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수사관의 임용권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음.

정부안 제22조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기관을

127) 「검사징계법」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규정함으로써 징계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징계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정하는 취지임.

정부안 제22조제2항과 유사한 입법례인 「경찰공무원법」 제33조¹²⁸⁾는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에 대한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의 입법례 및 중대범죄수사청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안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 의결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부안 제22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0장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22조제4항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제78조), 징계의 종류(제79조), 징계의 효력(제80조), 징계 등 절차(제82조) 등을

128) 「경찰공무원법」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준용함으로써 징계 절차 및 효력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¹²⁹⁾

129) 「국가공무원법」 제10장 징계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생략)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생략)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생략)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등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사) 행정소송의 피고(안 제39조)

제 정 안
제39조(행정소송의 피고) 수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휴직, 면직,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안전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피고로 한다.

정부안 제39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부안 제39조는 징계처분, 휴직, 면직,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대범죄청수사관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청구권¹³⁰⁾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생략)

제82조(징계 등 절차)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권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생략)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생략)

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생략)

130)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취지임.

유사입법례인 「경찰공무원법」 제34조(행정소송의 피고)는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유사입법례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을 위해 앞선 인사처분의 주체에 대한 검토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정부안 제39조의 행정소송의 피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인사위원회, 보수 등

가)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안 제32조)

제 정 안
제32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①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관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준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사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수사관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4. 수사관의 임용, 전보, 승진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

제 정 안
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사관 2명 2.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⑥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⑦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32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32조제2항은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준 및 기본계획의 수립,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신규채용, 임용, 전보, 승진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안 제32조제5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음.

정부안 제32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에서 인사행정의 기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뒤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제32조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검찰청법」 제35조는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¹³¹⁾

「경찰공무원법」 제5조는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¹³²⁾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제5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9조제2항은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에 대한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의 입법례 및 중대범죄수사청

131) 「검찰청법」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①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검사 3명. 다만, 제28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검사를 제외한 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2호의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④ ~ ⑥ (생략)

132) 「경찰공무원법」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안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를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하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적격심사위원회(안 제33조)

제 정 안
제33조(적격심사위원회) ① 적격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수사관 4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호에 따른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 및 임기, 그 밖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33조는 안 제28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정부안 제33조는 적격심사가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경찰공무원법」에서는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에 대해 적격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보수 등(안 제34조)

제 정 안
제34조(보수 등) ① 수사관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책임도 및 난이도, 업무수행 능력, 업무 실적 및 그 밖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수사관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안 제34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보수는 담당 직무의 비중, 책임도, 난이도, 업무수행 능력, 업무 실적 및 그 밖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34조제2항은 수사관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34조는 보수를 결정할 때 담당 직무의 책임도, 난이도,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검사의 보수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고 있으며, 검사 외의 검찰청 직원 및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정안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사관의 보수 기준을 결정할 주무 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참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수 등)에서는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³³⁾

라) 근무성적 등의 평정(안 제36조)

제 정 안
제36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외에도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과오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수사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보,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이 경우 수사관에 대한 평정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3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제외한 중대

1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수 등) ① 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② 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③ 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④ 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근무성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수사관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보, 승진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36조는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정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안 제21조에 따른 수사관의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임.

유사한 형식의 입법례로 「검찰청법」 제35조의2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근무성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¹³⁴⁾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는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경찰청장이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의2는 경찰청장이 근무성적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¹³⁵⁾을 고려하면,

134) 「검찰청법」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3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담당하고 있음.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입법례 및 중대범죄수사청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안 제36조제1항과 제3항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주체를 안 제17조에 따른 수사관의 임용, 안 제3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설치 등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2(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한한다)
2.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마) 인재개발(안 제38조)

제 정 안
제38조(인재개발) ① 수사관은 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 사고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수사관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제38조는 수사관이 지식, 사고능력,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38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들이 지능화, 복잡화, 고도화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 사고능력,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정부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국가공무원법」 제50조가 있음.¹³⁶⁾

136)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안 제38조제2항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교육훈련기관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바)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안 제40조)

제 정 안
제4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각각 “계급”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으로, 같은 법 제50조의2제3항, 제67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8항 중 “이 법”은 각각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같은 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같은 법 제73조의4제2항 중 “직급”은 “계급”으로,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1조”는 이 법 “제21조”로 본다.

정부안 제40조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40조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¹³⁷⁾

137)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 부칙

1) 시행일(부칙 제1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3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4호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안 부칙 제1조는 제정법률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정부안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32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안 제18조(결격사유) 중 제4호인 공소청 검사는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정부안의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정부조직법」 제37조제9항과 제10항의 시행일이 2026년 10월 2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법률과 시행일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정부안 제8조와 제32조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준비를 위한 취지임.

정부안 제18조제4호를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초기에는 임용희망을 하더라도 기관의 사정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유예하려는 취지임.

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부칙 제2조)

부 칙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의 임명,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정부안 부칙 제2조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의 임명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부칙 제2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3) 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부칙 제3조)

부 칙
제3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은 이 법 시행 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6조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고,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부칙 제3조는 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 10월 2일 중대범죄 수사청장이 임명되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4) 공무원의 임용 특례(부칙 제4조)

부 칙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①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7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5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3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②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7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2. 종전 검찰청 소속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 및 해당

부 칙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5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3. 제2호 외의 일반직공무원: 제13조에 따른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면제하지 아니하되,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공무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법률상의 정년에 따른다.

⑥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임용되기 전의 봉급에는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등을 고려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용의 방법·절차, 임용예정직급, 경력인정, 임용되기 전의 봉급, 봉급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안 부칙 제4조는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안 부칙 제4조제1항은 2026년 10월 1일 당시 검찰청 소속 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일반직 공무원 및 해당 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은 동일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정부안 부칙 제4조제2항은 이 법 시행(2026년 10월 2일) 당시 「공소청청법」 부칙 제6조¹³⁸⁾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함)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정부안 부칙 제4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임용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되, 시험은 면제하고 시보 임용은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안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검찰청

138) 「공소청청법안」 부칙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휴직 기간은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의2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소속 공무원과 2026년 10월 2일 기준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중대범죄 수사청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속하게 구성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유사한 입법례로 방위사업법이 2006년 1월 제정될 당시의 부칙 제14조는 방위사업청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¹³⁹⁾

정부안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는 검사의 임용 시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직급의 대략적인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 제도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 부칙에 대략적인 직급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현행 「검찰청법」 제6조¹⁴⁰⁾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차장검사, 부장검사¹⁴¹⁾, 부부장검사 및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¹⁴²⁾ 등으로 구분된다는

139) 「방위사업법」 부칙 (법률 제7845호, 2006. 1. 2. 제정)

제14조 (특별채용 등의 특례) ① 이 법 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소요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봉급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0)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점을 고려하여 직급을 결정하는 기준에 검사의 수사 경력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부안 부칙 제4조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정부안 부칙 제4조제4항은 부칙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상당 직급의 개략적인 범위를 법률 부칙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정부안 부칙 제4조제6항은 부칙 제4조제1항제제2호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의 봉급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부칙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검찰청 검사와 2026년 10월 2일 기준 공소청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더라도 보수가 삭감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141)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142)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정부안 부칙 제4조제6항과 유사한 입법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제3항은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³⁾

5) 징계절차에 관한 특례 등(부칙 제5조)

부 칙
제5조(징계절차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용 당시 해당 임용 전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징계위원회는 임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용 당시 해당 임용 전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으나,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그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가 행한다.

143)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①·②(생략)

③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직하는 사람의 봉급이 전직하기 전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생략)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2. 직제나 정원의 개정·폐지로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칙
③ 제1항에 따라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을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및 효력과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의 효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정부안 부칙 제5조는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① 그 임용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요구된 것으로 보고(제1항), ② 임용 전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종료되었으나,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안 부칙 제5조는 부칙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정법률에 따라서 해당 징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 하려는 취지임.

6)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

부 칙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하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안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2026년 10월 2일)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이 법 시행 전(2026년 10월 1일)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2026년 10월 2일)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려는 취지임.

정부안 부칙 제6조는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지만, 2026년 10월 1일까지 검찰청이 운영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2026년에 실시되어 진행 중인 검찰청 채용 시험의 효력을 인정하고, 동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무담임권¹⁴⁴⁾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144)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7) 다른 법률의 개정(부칙 제7조)

제 정 안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정부안 부칙 제7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6항을 개정하여 특정직공무원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안 부칙 제7조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도록 한 정부안 제11조와 관련 법률 조항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¹⁴⁵⁾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6항¹⁴⁶⁾과의 체계정합성을

14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46)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경찰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만 해당한다)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외무공무원
2. 법무부: 검사
3.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4. 행정안전부의 안전·재난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5. 소방청: 소방공무원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정부안 부칙 제7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행정안전부에 파견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것임.

다만,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¹⁴⁷⁾ 행정안전부 조직에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직제가 없으며, 2022년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설치되었으나, 2025년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확보¹⁴⁸⁾를 위해 폐지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부칙 제8조)

제 정 안
제8조(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47) 「정부조직법」 제37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48)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100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정부안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법령 포함)에서 제4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보려는 취지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연혁상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법무부가 소관한 부령¹⁴⁹⁾ 등을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것으로 보려는 취지임.

다만, 정부안 부칙 제8조는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제8조와 유사한 형태인데,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제8조는 행정기관의 사무가 승계되는 것을 정한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부칙 제2조를 전제로 하고 있음.¹⁵⁰⁾

149)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대범죄 수사 직무와 관련된 부령에는 「검찰근무 규칙」(법무부령),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법무부령) 등이 있음.

150)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관한 사무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관한 사무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제1항에 관한 사무	지식재산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1조제1항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1항에 관한 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5조에 관한 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의 소관사무	국가데이터처장
특허청장의 소관사무	지식재산처장

② · ③ (생략)

이를 고려하면, 정부안 부칙에 「정부조직법」 부칙(법률 제21065호) 제2조와 유사한 형식으로 검찰청의 사무 중 중대범죄수사청에 승계되는 사무를 특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정부안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제4조에 따른 직무”인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담당하는 사무에도 해당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언 상으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제4조에 따른 직무”를 “검찰청 소관 사무 중 정부안 제4조에 따른 직무에 해당하는 부분” 등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8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3. 황운하의원안 및 정부안의 주요내용 비교·검토

가. 제정안들의 목적, 배경

제정안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2025. 10. 1. 개정, 2026. 10. 2. 시행예정) 제37조제9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황운하의원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의되었고, 정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후에 발의됨.

나. 제정안들의 구성 및 주요 내용

황운하의원안은 본칙 5장 31조,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정부안은 본칙 6장 52조,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됨.

제정안들의 본칙 조항은 내용을 기준으로 ① 총칙, ② 조직, ③ 직무, ④ 인사로 구분할 수 있음.

제정안들은 ① 총칙에서 중대범죄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② 조직과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권한남용 금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절차, 지방중대범죄수사청 등을 규정하며, ③ 직무와 관련해서는 수사관의 직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④ 인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관의 임용,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함.

제정안들의 각 조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음.

< 황운하의원안 및 정부안 조항 비교 >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1. 총 칙 (중대범죄 정의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조직, 직무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 중대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중대범죄등, 관련범죄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제4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제5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 중대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사이버범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 중대범죄등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제4조(직무) 제41조(권한남용 금지) 제5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제2장 수사청 제6조(수사청장)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8조(차장) 제10조(수사본부장) 제11조(수사연구관) 제29조(그 밖의 직원) 제9조(하부조직) 제28조(수사공무원의 정원)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제6조(중대범죄수사청장)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제9조(차장) 제11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12조(수사연구관) 제13조(그 밖의 직원) 제14조(직제)
제3장 지방수사청 및 지청 제12조(지방수사청장) 제13조(직제)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구성 제10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3. 중대범죄수사청 직무	
제4장 수사관 등 제14조(수사관의 직급 등)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제3장 수사관 제15조(수사관의 구분) 제16조(수사관의 직무) 제42조(직무수행 및 이의제기)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제18조(수사관의 직무관할) 제30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43조(정치 관여 금지 등) 제52조(정치 관여죄) 제4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45조(검사와의 관계) 제46조(수사심의 등) 제47조(수사 장비의 사용) 제48조(유치장) 제49조(손실보상) 제50조(국제협력) 제51조(위임규정)
4. 중대범죄수사청 인사	
제4장 수사관 등 제14조(수사관의 직급 등) 제15조(수사관의 자격) 제19조(결격사유) 제26조(수사관의 파견 금지 등) 제27조(공직임용 제한 등) 제24조(징계) 제31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제23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제20조(당연퇴직) 제16조(인사위원회) 제22조(보수 등) 제21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31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제3장 수사관 제15조(수사관의 구분) 제17조(수사관의 임용) 제18조(결격사유) 제19조(수사관의 신규채용) 제20조(시보 임용) 제21조(수사관의 승진) 제23조(파견 및 겸임 금지) 제24조(공직임용 제한) 제25조(감찰관의 임용에 관한 특례) 제26조(감찰관의 전보) 제27조(감찰관의 퇴직) 제37조(겸임) 제22조(징계) 제28조(적격심사) 제29조(직권면직) 제30조(당연퇴직) 제31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제35조(정년) 제39조(행정소송의 피고) 제32조(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 제33조(적격심사위원회) 제34조(보수 등) 제36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38조(인재개발) 제4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5.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준비행위) 제3조(검사의 수사청 공무원으로의 임용 특례)	제1조(시행일) 제2조(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제3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제5조(계속 중인 징계절차에 관한 적용특례 등) 제6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8조(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 제정안들의 주요 내용 비교·검토

황운하의원안과 정부안을 1) 중대범죄의 범위, 2)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과의 관계, 3)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음.

1) 중대범죄의 범위

중대범죄의 범위와 관련해서 황운하의원안과 정부안은 공통적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를 포함함. 4가지 범죄 외에 황운하의원안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및 대형참사를 포함하여 현행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검찰의 수사범위와 일치함. 정부안은 내란·외환죄를 포함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안은 사이버범죄를 포함하고 있음.

< 중대범죄의 범위 >

구 분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중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공직자범죄 · 선거범죄 · 방위사업범죄 · 마약범죄 · 대형참사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방위사업범죄 · 마약범죄 · 내란,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 사이버범죄

제정안의 중대범죄 범위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의 기본적 의미, 범죄 수사에 있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수사기관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 및 각 수사기관의 조직·인력·범죄수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과의 관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휘·감독, 인사권, 재정권 등에 있어서 규율 내용에 차이가 있음.

먼저, 행정안전부 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황운하의원안 제5조와 정부안 제5조는 행정안전부(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황운하의원안 제6조제8항은 수사청장이 중대범죄등에 대한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황운하의원안 제10조제1항은 수사본부장이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관련 조항 >

구 분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일반적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5)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5)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수사청장만 지휘·감독(§5)	수사청장만 지휘·감독(§5)

다음으로, 인사권과 관련해서 6급 이하의 수사관의 임명 또는 임용하는 자를 황운하의원안 제14조제3항은 수사청장으로 규정한 반면, 정부안 제17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곳과 관련하여 황운하의원안 제16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를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도록 한 반면, 정부안 제32조제1항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도록 하고 있음.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곳과 관련하여 황운하의원안 제24조제2항은 징계위원회를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도록 한 반면, 정부안 제22조제1항제2호는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인사권 관련 조항 >

구 분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수사5급 등 이하 수사관 임명·임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5급 이하 수사관 임명(§14③)	행정안전부장관이 6급 이하 수사관 임용(§15②)
인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16①)	행정안전부에 설치(§32①)
징계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에 설치(§24②)	행정안전부에 설치(§22①2)

그리고, 재정권과 관련해서는 황운하의원안 제6조제7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한 반면,

정부안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황운하의원안 제6조제7항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경찰청 등 정부조직법에 따른 청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¹⁵¹⁾에 따른 중앙관서에 해당하여 각 기관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검찰청의 경우 법무부 예산 프로그램(관) 중 “검찰활동”¹⁵²⁾으로 편성되어 있고 해당 예산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청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¹⁵³⁾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예산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동 규정들이 마련된 것으로 보임.

< 재정권 관련 조항 >

구 분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예산업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가재정법」 §6②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봄	미규정

중대범죄수사청과 행정안전부(법무부)장관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151)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152) 검찰활동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에는 형사법정비(1338-300), 형사보상(1337-302),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공판활동지원(1337-300), 마약수사(1335-304),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1335-303), 공공수사(1335-302),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1334-501),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1334-500), 국제형사협력지원(ODA)(1333-303), 과학수사인프라구축(1333-302),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1333-301), 검찰청시설운영(1333-300)이 있음.

153) 동아일보 2019년 10월 23일 기사, “‘검찰예산 법무부서 분리편성해 국회가 심의’ 논란”

중대범죄수사청이 실시하는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경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현행 수사기관의 운영되는 방식 및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황운하의원안 제30조제1항과 정부안 제44조제1항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황운하의원안 제30조제2항과 정부안 제44조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
(황운하의원안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외)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황운하의원안 제30조제3항과 정부안 제44조제3항에서는 중대범죄수사
청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

황운하의원안 제30조제4항 및 정부안 제44조제4항에서는 중대범죄
수사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구 분	황운하의원안	정부안
다른 수사기관 공무원과 협력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함 (§30①)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과 협력해야 함 (§44①)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도록 함 (§30②)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도록 함 (§44②)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범죄 혐의 발견 시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범죄 혐의 발견 시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 (§25)	미규정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 가능 (§30③)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요청 가능 (§44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제외한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가능 (§30④)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가능 (§44④)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이첩요청권, 이첩권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중대범죄 수사에서 경합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중대범죄 수사에서 중대범죄 수사청의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 수사 체계를 단일화하여 수사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수사기관 간 경쟁 체계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를 견제하고, 조직간 경쟁을 추구할 것인지 등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검사와의 관계

정부안 제45조제1항은 수사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제45조제3항은 수사관이 중대범죄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공소청 검사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및 수사경과 등 수사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안 제45조 제5항은 검사와 수사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은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황운하의원안에는 검사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행 검사와 경찰청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 6788-5345